##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17

발의연월일: 2021. 6. 28.

발 의 자:인재근·고영인·최종윤

양이원영 · 김홍걸 · 김영배

송갑석 · 조오섭 · 서동용

김민기 · 소병훈 · 양경숙

박홍근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이하 제15조)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현행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음. 정신장애인이 현행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중복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임.

그런데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복지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을 뿐, 관련 재정지출과 세부적인 전달체계의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제15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현장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규정으로 사용되면서,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내몰고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15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법률 제 호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에 따른 장애인 중 <u>「정신건</u>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물 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